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2가단51167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7,338,269원 및 그 중 15,619,210원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22. 4. 17.까지는 연 8%, 35,739,210원에 대하여 2022. 4. 18.부터 2022. 5. 1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5.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1. 5. 28. 접수 제849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박지원

별지